Save the Children

#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2017년 협력병원 공개 모집

## 1. 사업목적

질병이 의심되거나 이미 발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하는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해 적극적인 치료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2. 사업내용

| 구 분 | 내 용 |
|---|---|
|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
| 지원대상 |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의 만 18세 이하 국내 거주 아동<br>(이주배경아동 포함. 단,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
| 지원항목 | 협력병원에서 발생한 검사/외래/입원/수술비<br>(단, 예방적 차원 또는 미용/성형 목적의 검사 및 치료 제외) |
| 지원원칙 | 1인 1회 지원(지원기간 최대 6개월) |
| 지원방법 | ① 세이브더칠드런이 협력병원에 사업비 전달(1월, 7월)<br>② 협력병원이 대상자 선정<br>③ 협력병원이 세이브더칠드런에 사업결과 보고(7월, 2018년 1월) |
| 기타 | 사업설명회 참석 필수(2017.1예정), 실무자 전용 업무매뉴얼 제공 |

## 3. 사업 규모

- 전국에 40여개 협력병원 선정 예정
- 협력병원 1곳 당 500~1,000만원의 사업비 배분
  (단, 확정된 사업비라도 협력병원의 사업비 집행률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 4. 사업 절차 및 기관별 역할

| 주요 절차 | 일정 | 기관 | 주요 역할 |
|---|---|---|---|
| 협력병원 공개 모집 | 2016/11/22 – 12/2 | 세이브더칠드런 | - 업무매뉴얼 등 운영지원<br>- 병원 및 대상자 모니터링 |
| 심사 | 12/5 – 12/16 | | |
| 협력병원발표, 협약체결 | 12/19 – 12/30 | | |
| 사업설명회 개최 | 2017/1 첫째주(예정) | 협력병원 | - 사업홍보 및 아동발굴<br>- 의료비지원과 사례관리<br>- 사업보고 및 평가 |
| 사업비 지급 | 2017/1 둘째주(예정) | | |
| 사업 모니터링 | 2017/5, 10월(예정) | | |
| 사업 평가 | 2018/1 | | |

## 5. 협력병원 선정

### ■ 필수 충족 기준

1)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을 준수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1]에 합의하여 병원장과 실무자의 서명을 날인할 수 있음.
2) 본 사업의 목적을 이해하고 협력병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 (사업설명회 참석, 현장모니터링 및 사업평가 협조 포함)
3) 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함.
4) 병원 내 사회복지팀(사회사업팀)이 존재하며, 해당 팀 내에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1인 이상 상주함.

1) [서식2] 참고. 협력병원으로 최종 선정된 후 협약절차 진행 시 서명 날인하여 제출

■ **심사 기준**

아래의 내용을 토대로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해 협력 여부와 사업비를 결정함.

1) 지리적 위치: 시/도, 시/군/구 별로 고루 위치할 수 있도록 선정
2) 병원 규모와 실무인력: 아동환자 수, 아동상담건수, 병상 수 대비 사회복지사 수, 의료진/원무팀의 협조가능여부 등
3) 병원의 성격: 여러 질환을 다루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선정
4) 병원 사회복지사의 열의, 역량, 홍보계획 등('서식1'의 두 번째 페이지 참고)
5) 본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병원의 경우, 이전 사업수행 실적 반영

■ **심사 방법**

서류심사, 사회복지사 전화인터뷰(필요시)

■ **결과 발표**

- 2016년 12월 넷째주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최종 선정된 병원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약절차 진행, 2017년 1월 사업설명회 참석

## 6. 협력병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16년 11월 22일(화) - 2016년 12월 2일(금) ※ 서류 도착일 기준

■ **신청 시 접수할 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 공문 1부
2) 사업 신청서 1부(서식1)
3) 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병원 명의 통장사본 1부

■ **서류양식 배포처**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sc.or.kr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amsw.or.kr

■ **접수 방법** ※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종류 | 정보 |
|---|---|
| E-mail (권장) | daegyu.you@sc.or.kr |
| 우편 | (04080)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174 세이브더칠드런 6층<br>국내사업부 교육보건팀 유대규 앞 |

■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사업본부 국내사업부 교육보건팀 유대규 ☎ 02-6900-4432

## 7. 협력병원 신청 서식

| 서식번호 | 서식명 | 서식활용 |
|---|---|---|
| [서식1] | 사업 신청서 | 사업 신청 시 제출 |
| [서식2] |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 협약 체결 시 제출 |

[서식1] 사업 신청서

# 2017년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 협력병원 신청서

| | | | |
|---|---|---|---|
| | | **등록번호** *기입하지마시오 | **2017 -** |
| **병원명** | | **대표자** | |
| **의료기관 유형**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문병원(영역: ) | **설립년월일** | |
| **주소** | | | |
| **보유 병상** | 전체: 병상 / 소아병동: □무 □유(병상 수: 개) | | |
| **월평균 외래환자 실인원** | 전체: 명 / 아동/청소년: 명 (전체대비 %) | | |
| **월평균 상담환자 실인원** | 전체: 건 / 아동/청소년: 건 (전체대비 %) | | |
| **사회복지(사업)팀** | □무 □유(STAFF: 명, 수련/인턴: 명) | | |
| **원내후원금 규모** | 외부후원금: 연 원 | | |
| | 주 지원대상: (연령/질환/외래지원 가능여부) | | |
| | 병원자체후원금: 연 원 | | |
| | 주 지원대상: (연령/질환/외래지원 가능여부) | | |
| **의료진 협진 정도** | □상 □중 □하 | **원무팀 협조 정도** | □상 □중 □하 |
| **사업비 입금 계좌** | **은행명** | | |
| | **계좌번호** | | |
| | **예금주** | | |

| | | | | |
|---|---|---|---|---|
| **사업 담당자 정보** | | | | |
| **담당자 성명** | | | | |
| **연락처** | **전화** | | **팩스** | |
| | **휴대전화** | | **E-mail** | |

| | |
|---|---|
| 담당자 경험적 진술 | **귀 병원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 기술**<br>(본 사업 협력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세요.) |
| | **아동/청소년 사례개입 경험 2건 기술** |
| | **지역사회 내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 경험 2건 기술** |
| | **협력병원 선정 시 아동/청소년 환자 발굴을 위한 원내/외 사업홍보 계획** |

**이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세이브더칠드런의 2017년 '검사 및 외래비 지원사업'의 협력병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년 월 일

**기관대표자: (인)**

**담 당 자: (인)**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귀중**

[서식2] 아동안전보호정책 이행확약서

**Save the Children**
**Child Safeguarding Policy**

# 아동안전보호정책에 관한
# • 사명 선언문
# • 아동에 대한 약속
# • 행동강령

우리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 학대, 유기,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직원, 관련자[1] 및 협력기관 직원[2]들은 직무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음의 사명 선언문과 아동에 대한 약속을 실천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소속

직위

서명 인

Save the Children

## 사명 선언문
## Mission Statement

- 세이브더칠드런의 지향 목표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기관이 되는 것이다.
- 세이브더칠드런의 모든 관계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러한 문제의 예방, 보고 및 대응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우리 직원과 관련자들은 아동을 대할 때 언제나 최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이 규약에 명시된 행동의 기준을 각자의 사적 및 업무상 삶의 영역에 적용할 것이다.

## 아동에 대한 약속
## Commitment to Children

- **인식** 우리는 모든 직원, 협력기관 및 기타 관련자가 아동학대와 성 착취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확실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며, 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우리의 관련자들이 준수할 행동의 기준과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릴 것을 약속한다.
- **예방** 우리는 인식 증진 활동과 모범적인 실천을 통해서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이 아동이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할 것을 보장하며, 직원과 관리자들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학대와 아동 성 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 **보고** 우리는 직원 및 다른 관련자들이 아동학대 또는 착취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를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 **대응** 우리는 아동이 잠재적으로 학대 받고 착취당하는 상황에 있다는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한다.

## 행동강령
## Code of Conduct

**1. 직원, 관련자 및 협력기관들은 결코:**

1.1. 아동을 때리거나 아동에게 신체적인 공격 혹은 학대를 가하지 않는다.
1.2. 현지에서의 성년 연령 또는 동의 여부를 불구하고 18세 이하의 아동과 성접촉 또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며, 아동의 나이를 잘 못 알았다는 것으로는 변명될 수 없다.
1.3. 어떤 형태든 아동과 착취나 학대로 간주될 수 있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1.4. 아동을 상대로 학대하거나 학대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1.5.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공격적이고 학대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러한 제안 또는 충고를 하지 않는다.
1.6.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신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7. 보호자 없이 방새 아동/아동들의 집에 머무르지 않는다.
1.8. 아동과 같은 방이나 침대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1.9. 아동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 하지 않는다.
1.10. 아동이 하는 불법적이고 위험하거나 학대적인 행동을 묵과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
1.11. 아동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창피를 주고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도 행하지 않는다.
1.12. 아동들을 차별하거나 특정 아동을 편애하지 않는다.

이는 광범위하게 혹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아니며, 직원들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으로 학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아동과 접촉하는 모든 직원과 관련자들은:**

2.1. 위험성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그에 대처한다.
2.2.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 작업장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2.3. 아동과 함께 있을 때는 가능한 개방된 장소를 이용한다.
2.4. 어떠한 문제나 우려사항이라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개방적 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2.5.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나 잠재적 학대 행위가 문제시 되지 않은 채 지나가지 않도록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다.
2.6. 아동에게 직원이나 기타 관련자의 연락 정보를 알려 주고, 어떤 문제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7. 아동의 역량을 강화한다–아동의 권리,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문제 발생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논의 한다.
2.8. 업무에 있어 공과 사를 분명히 구별하도록 한다.
2.9.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신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동들을 대한다.

**3.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

3.1. 단독으로 아동과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3.2. 특히 아동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 가는 것
3.3. 위법행위로 협의 받기 쉬운 상황에 놓이는 것

1. 관련자: 세이브더칠드런의 자원봉사자, 임원, 수탁인
2. 협력기관 직원: 협력기관 및 세이브더칠드런과 어떤 종류이든 아동과의 접촉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계를 공식적으로 맺고 있는 기타 개인, 단체 혹은 조직의 직원 및 관련자를 말함

Evaluation copy